

국내 미술품시장의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Art Auction Market System

박민혁¹, 김연희^{2*}

Min-Hyuk Park¹, Yeun-hee Kim^{2*}

요 약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경매시장은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확장·발전 되고 있다. 한국의 미술품 경매 시장 또한 국내외로 좋은 작품의 거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발전적인 미술품경매의 형태를 하고 있는 영국, 미국, 홍콩 등의 제도적 시스템들에 비해 한국의 미술품 경매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스템들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미술경매시장의 시스템도입은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홍콩의 라이선스, 경매법, 진품보증에 관한 제도들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 보고, 한국의 경매시장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핵심어 : 미술품경매, 영국, 미국, 홍콩, 라이선스, 경매법, 진품보증

Abstract

Worldwide, The Art Auction Market is expanding year by year and the Korean art market is also trying to draw good works and good deals both at home and abroad. But the stable and transparent systems for Korean art auctions are very lacking compared to the institutional systems of UK, USA, Hong Kong which are the most advanced art au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Korean art auction marke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rt auction market. Accordingly, we propose to improve the auction market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the licensing, the auction law, and the genuine guarante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Hong Kong with the domestic system.

Keyword : Art auction, UK, USA, Hong Kong, license, Auction law, Authenticity guarantee

1 Baekgong museum, Gangwon-do, Korea [Curator]
e-mail: palak1@naver.com

2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September 25, 2018), Review Result(1st: October 10, 2018), Accepted(December 04,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생활수준, 지적수준의 향상과 함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서구에 비해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진 국내미술품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현재, 미국, 영국, 중국이 전 세계 미술품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유럽의 미술품경매시장은 미국의 뉴욕으로 이동하면서 1990년대 일시적인 성장통을 겪었고 그 후에 엄청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시아는 홍콩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1]. 더욱이 중국의 미술품시장 진입은 나날이 상향곡선을 그리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미술품 시장으로 작년 작품총액 149억 달러 중 51억달러(34.2%)가 거래되었으며 더 이상 미술품시장이 유럽과 미국의 전유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활발한 중국내 한국 미술품 전시를 통해 한국작가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 세계 미술품시장형성에서도 그 규모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미술품시장은 안정장치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전히 미술품시장의 전문성 부족,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 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술품시장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며 작가와 컬렉터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미술품시장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미술품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술품시장에 관하여

2.1 미술품시장의 역사

미술품이란 저작권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말하며, 오로지 인간만이 미술을 통해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미술이 가지는 본질이자 기능을 뜻한다[2]. 미(美)란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다. 인류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며[3] 그에 따른 수준과 시야가 형성되어 인간이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사고파는 행위가 자연스레 생성되었다. 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그림과 조각들을 단지 감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용해왔으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술품시장(ART MARKET)이다. 시장의 고유 형식을 따라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용역 등이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되는 장소를 뜻하는 미술품시장은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와 같은 미술품 전문 시장을 중심으로 작가 대 컬렉터, 컬렉터 대 컬렉터의 작품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미술품시장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발전을 해왔고 현재에 이르러 인간의 의, 식, 주 외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중심매체가 되어 시대별, 나라별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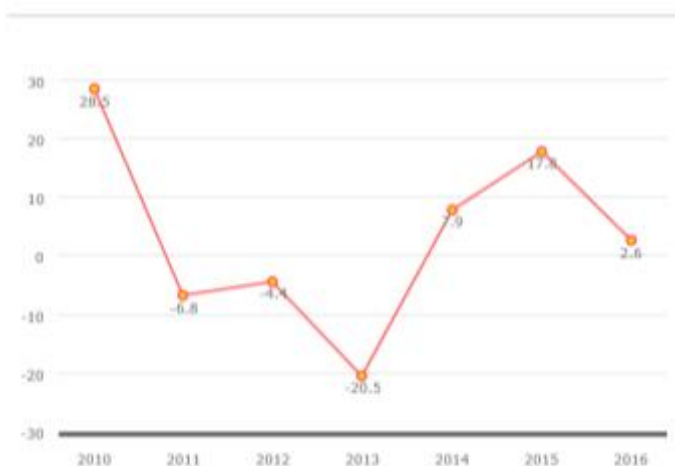
미술품시장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7세기와 18세기 들어서 부터였다. 당시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미술품들의 경매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중반에 들어서 영국에서도 경매회사들이 생성되어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호황기를 맞게 된다. 17세기 시장경제의 탄생은 개인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적 취향에 맞게 작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17세기 후반부터 성행한 영국의 미술품경매시장은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오늘날 세계 2차 미술품시장을 주도하는 미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Christie's), 소더비즈(Sotheby's), 본햄스(Bonhams), 필립스 데 퓨리(Phillips de pury)가 문을 열게 되었다. 또한 18세기 프랑스 시민혁명과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층이 생성되고 미술품의 소비자층이 많아짐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미술품시장이 형성 되었으며 미술품경매시장의 전문가인 아트딜러(Art dealer), 갤러리스트(Gallerist)의 활약으로 인해 인상주의 작품들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4]. 20세기는 유럽에서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미술품시장이 서서히 바뀌었고, 1950년대, 뉴욕진출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해온 세계2대 경매회사인 영국의 소더비(Sotheby's)와 미국의 크리스티(Christie's)는 연간 6조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명품경매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안정적이지 못했던 미국의 경제 때문에 미술품시장 자체도 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그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게 된다[5].

1980년대 중반, 미국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역흑자로 인해 경제적 성장을 이룬 일본이 미술품시장에 뛰어들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 그로 인해 미술품투자와 투기가 성행하면서 미술품시장에서의 아트딜러의 위치는 높아졌고 풍부한 자산과 다양한 컬렉터들이 등장하면서 현대미술은 다원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감추어져 있던 비주류문화가 미술품시장에 성행하게 되는 것도 80년대 미술시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미술품시장의 호황기는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의 몰락으로 미국과 일본 모두 타격을 입으면서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로 인해 1990년대는 미술작품 거래보다는 전시 큐레이터들이 주축이 되는 큰 규모의 미술전시회와 비엔날레가 성행하였다. 그리고 경매회사들이 컨템퍼러리아트에 뛰어들면서 90년대의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맞물려 미술품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6].

90년대 후반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서 미술품의 정보나 경매정보(경매에 출품된 작품, 가격)가 투명하게 공개되다보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손쉽게 경매에 참여함에 따라 온라인 경매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미술품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작가가 처음 거래하는 1차 시장보다 2차시장인 경매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국내 미술품시장의 역사는 서양에 비하면 매우 짧지만 1980년대를 시작으로 급성장하게 되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미술품유통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1957년 반도화랑을 중심으로 미술품시장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인 현대화랑이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미술품거래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강남지역에 신생화랑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인사동·사간동 외에 아니라 강남의 청담동·신사동으로 확장되었다[7]. 1991년 초까지 경기호황으로 미술품가격이 오르면서 그림의 투자가치를 보고 사려는 사람들과 화랑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림이 투자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8]. 그러나 IMF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술품시장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 2007년부터 다시 시작된 호황으로 미술품 가격이 급등하였고, 미술품 가치평가 기준이 작품 질적인 가치가 아닌 투자적 가치와 선물목적이 되며 거래가 또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경기악화로 인해 화랑들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미술시장의 작품거래 규모의 증감을 변화는 아래 [그림 1]의 시계열 분석(k-art market 통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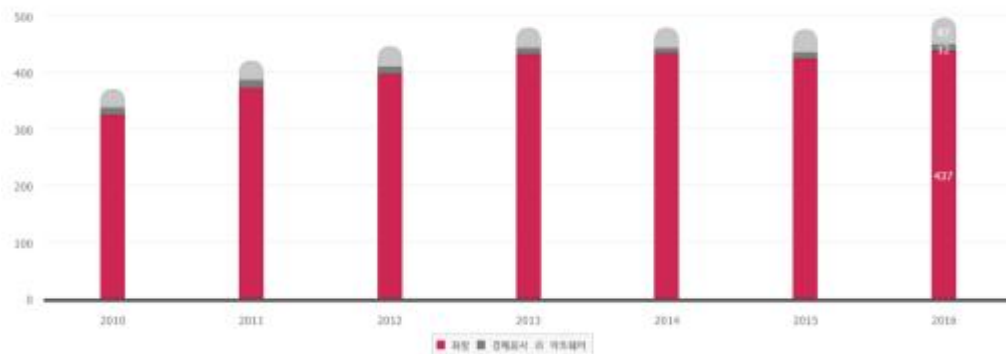
[그림 1] 국내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 증감을 추이(2016)

[Fig. 1] Trend of increase and decrease in size of Korea art market

2.2. 미술품시장의 분류

미술품시장에서 미술품의 유통구조는 미술품 창작자와 유통체계인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에서 소비를 하는 컬렉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미술은행과 미술관 같은 공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파생상품인 아트컨설팅, 아트펀드 등도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차 시장은 작가가 직접 거래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화랑이 주요요소이며, 아트페어 또한 1차 시장에 포함된다. 본래 아트페어는 화랑들이 일정한 장소

에서 부스를 설치, 작품판매가 목적인 전시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화랑을 거치지 않고 작가들이 직접 참가하여 작품을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아트페어도 개최되고 있다. 1차 시장과 달리, 2차 시장은 컬렉터가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매회사가 주요시장이다. 컬렉터가 소유한 작품을 경매라는 유통 체계를 이용해 다른 컬렉터(개인, 기업, 미술관계자 등)에게 재판매 하는 방식의 시장을 뜻한다. 또한, 미술작품의 투자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아트펀드와 같은 파생상품이 등장했다. 이는 미술관, 정부소장 미술품, 공공미술 등 공공영역의 분야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작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9]. 국내 미술시장의 종류와 규모는 아래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k-art market 통계자료)



[그림 2] 국내미술시장 규모(2016)

[Fig. 2] The size of the Korea art market

2.2.1. 화랑

현재의 화랑은 회화, 조각 등 미술작품의 전시장, 전시장을 경영하는 조직을 말하며, 서양의 갤러리를 의미하는 한자어로 화랑이라 칭한다. 영국의 경우 런던내셔널 갤러리를 국민화랑이라는 의미로 명명하는 등 미술관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개인 또는 사기업형태를 지칭한다. 경영형태는 전시장소만을 제공하거나, 특정미술가와 전속계약을 맺거나, 그 외의 중간형태 등이 있다[10].

2.2.2. 경매

미술품 경매는 미술품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술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순간부터 미술품의 미적 가치는 가격으로 인정받아 책정된다. 이는 미술품경매시장도 마찬가지이나, 미술품의 미적가치와 가격의 관계

가 상당히 불확정적이라는 점이 있다. 이미 한번이상 거래 되었던 물품의 2차 시장인 미술품 경매는 1차 시장 거래보다 미술품의 미적 가치와 가격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수월한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경매는 공개적인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을 띄게 되며 경매진행과정, 경매결과가 공개되고 가격은 다수의 경매참여자들 간의 경쟁적 입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을 띄고 있다.

2.2.3. 아트페어

아트페어는 여러 화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장소에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과 인기 작가와 신인 작가, 그리고 비싼 작품, 싼 작품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200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트 스코프(Art Scope)와 같은 중저가 아트페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12].

2.3. 미술품시장의 소비자개념 및 정의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을 소비, 그 주체를 소비자라고 한다. 미술품소비는 미술품시장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미술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를 컬렉터(Collector)라고 지칭한다. 이는 소비자로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수집 및 등록 과정을 통하여 물리적·합법적 소유권을 지닌다[13]. 이처럼 컬렉터는 미술품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미술품소비를 말하며 해외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인식은 낮아 미술애호가 혹은 단순투자자로 혼용하여 이해되어왔다. 또한 미술소비 중 미술품 감상은 구매자가 미술품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미술소비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다.

3. 국내외 미술품경매 제도 분석

3.1. 미술품 경매 거래 연구

3.1.1. 경매 거래의 방식

미술품경매 거래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가격을 올려가는 영국방식(최고가방식), 가격을 낮춰가는 네덜란드 방식(최저가방식), 이 둘을 병용하는 일본 방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4]. 특히 요즘은 온라인경매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경매, 온라인 경매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3.1.2. 경매 거래의 절차

경매거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경매 전, 경매, 경매 후로 구분한다.

첫째, 경매 전 단계는 ①위탁품 확보, ②도록 제작, ③프리뷰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위탁은 미술품판매를 희망하는 자가 경매회사에 작품 사진, 보증서, 출처 등 경매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 출품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경매회사의 작품 담당 전문가가 경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감정진행 후에 경매회사와 판매자의 최저희망가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출품이 확정된다. 작품의 출품이 확정 되면 본격적인 경매준비로 들어간다. 먼저 사전 작업으로는 ①작품 사진 촬영, 작품 설명문 작성, 작품 상태 점검 등을 통해 경매도록을 제작한다. ②출품작의 경매 순서를 지정하는 작품번호 결정이 진행된다. 경매회사는 경매도록에 추정가격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제공한다. 경매진행 전 마지막 단계는 ③프리뷰절차로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열리는 이 전시회는 공개적으로 경매참여자 들이 작품을 미리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리뷰는 대부분 경매 7일 전 또는 3, 4일 전부터 경매 하루 전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작품검토, 적외선 투시 검사, 작품 보존 상태 보고서 등이 작성된 작품상태보고서를 경매회사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간 단계이자 핵심단계인 경매는 실제로 경매거래에서 실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현장의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등록 후에 번호판을 교부받거나 혹은 번호가 있는 자리를 배정받고 경매도록에 기재된 작품번호 순서에 맞게 작품을 실물, 영상, 사진으로 보여주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입찰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응찰 또는 경매 진행시에 실시간 전화응찰, 온라인 응찰이 있다.

셋째, 경매의 마지막 절차는 경매의 유찰 작품 판매와 낙찰 작품의 사후 처리로 이루어진다. 유찰 작품은 경매 직후 구매를 희망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매회사가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의사를 묻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찰 작품의 구매희망자들은 책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고, 경매회사는 위탁자와의 판매가격 하향 조정을 통해 판매를 도모한다. 이렇게 거래가 성사된 작품 및 낙찰 작품은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한 구매대금의 지불 절차가 진행된다. 대금이 지불되면 구매자에게 작품이 인도되는데 대부분 원형 그대로 이전된다[15].

3.1.3. 거래의 법적 사항

경매인은 경매물품의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경매인은 경매를 통하여 물품의 거래를 알선하므로 민사중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판례와

통설은 민사중개를 위임으로 보고 민법상 위임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민법 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가 위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으로 하므로 상인이 되어 상사중개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외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거래 약관에 의해 규율되므로 구체적인 경매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는 미술품 경매거래 약관 부분에 명시된다[16].

3.2.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적 요인분석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미술품 경매 시장의 가장 발전적인 형태와 성공적인 모델인 미국, 영국, 홍콩의 경우를 살펴볼 때, 그 배경에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미술품 경매의 역사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한 관련법들을 들 수가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미술품경매시장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까지 안정적인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선진화된 미술품경매 시장을 위해 필요한 법과 시스템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술품경매 라이선스(License) 제도, 미술품 경매법, 미술품 진품보증이다.

3.2.1. 미술품경매 라이선스 제도

미술품시장은 국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법조항이 다르고 해석의 여지도 천차만별이라 무척복잡하다[17]. 영국, 미국, 프랑스, 홍콩, 일본, 중국의 경우, 경매규정과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미술품경매에 대한 법안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영국은 경매를 진행하는 자격규정인 “Auctioneers : Restrictions on Trading”에는 자격규정 외에 경매사자격증과 이름게시 규정, 경매사의 권한 등이 있고, 최저 경매가격이 설정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와 최저 경매가격의 낮은 가격 이하에 파는 경우에 대한 제한규정도 설정되어있다. 최근 영국의 “Auctioneers and Agents regulation, 1986”에서 발췌한 라이선스에 대한 법규는 신청서, 라이선스 서명, 라이선스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 변경, 라이선스 및 등록증서의 등록 등이 있으며 라이선스에 대해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갱신, 부활, 매니저 라이선스, 매니저 라이선스의 갱신이나 부활, 기업 라이선스, 기업 라이선스의 갱신이나 부활, 등록증서, 등록증서 갱신, 부활 등이 신청하는 사람은 명시된 양식을 사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라이선스나 등록증서 갱신 또는 부활 신청자는 신청서에 의도적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작성하는 것을 승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청서가 중요한 면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어떤 문제나 사항을 누락하거나 누락을 승인하면 안 된다. 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신청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 ③ 등록기관은 라이선스나 등록증서 갱신, 부활 신청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을 대리해 신청

하는 경우에는 재무 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나 신청을 목적으로 생성된 모든 정보나 진술서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기업 라이선스나 기업 라이선스의 갱신, 부활신청서는 기업의 대표 혹은 대리인, 매니저 또는 이사들이 작성해야 한다. 미국의 유관 법규에는 “뉴욕의 경매인(경매사)은 경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8].

3.2.2. 미술품 경매법

뉴욕시 경매규제법의 경우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거하여 경매사, 위탁자 혹은 위탁자의 대리인 간에 서면계약이 없다면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탁매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인 항목들이 있다. 첫째, 위탁매매 계약서에는 가능한 모든 제반 비용, 수수료를 명시하고 모든 수수료, 비용은 위탁자로서 경매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둘째,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서면 계약서에 포함한다. 셋째, 위탁자의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경매에 진행되는 물품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의도적인 수익자는 경매에서 궁극적으로 구매자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대형경매회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에 위의 조건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위탁자와 경매회사의 위임 계약에 의한다. 경매회사는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피신탁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피신탁인으로서 의무의 범위는 계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매회사의 대한 분쟁은 적게나마 발생하며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비롯한 위임인에 대한 경매회사의 위임계약에 의한 의무와 경매에 의한 고객대상 의무의 균형 등에 대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3.2.3. 미술품 진품보증

진품보증의 경우도 뉴욕의 ‘Uniform commercial code’를 적용한다. 제2-313에 의하면, 명시적 보증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 즉, 당사자 간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설명의 내용과 실제의 상품이 일치하는지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실한 보증에 판단해서물건을 구매했다면 명시적 보증으로 성립된다. 제2-703조에 의하면 매수인의 일반적 구제방법으로는 매수인이 물품수령을 불법적으로 거절하거나 취소 또는 양도하는 시기나 그 전에 이행해야 할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 혹은 전체의 변제를 거부할 경우 직접적으로 대상물품에 대한 위반이 전체의 계약에 영향을 주거나 전체의 계약에 관련한 것이라면 양도되지 않은 나머지 전체에 관하여 손실을 당한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양도를 중단한다.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바(제2-705조)와 같이 수탁자에 의한 양도를 정지한다. 해당계약에 특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의 규정(제2-706조)에 따라 재판매하여 손해를 회복한다. 미수령에 대해(제2-708조)또는 적절한 경우에 가격에 대한(제2-709조)손해를 회복 또는 해약 할 수 있다[19].

4. 논의 및 결론

4.1.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 제도 분석 결과

먼저,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며, 라이선스 등록증서에 반드시 서명 하도록 한다. 또한 등록 진행한 후 사무실에 전시되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스 등록조건여부에 대한 규정은 라이선스를 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개시하여야 한다. 각 나라마다 등록조건 규정이 존재한다.

셋째,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경매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이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경매사가 경매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20].

넷째, 경매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의 처벌 여부는 각 나라마다 규정마다 다르다. 홍콩의 경우 경매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어 규정을 어길 시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또한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

다섯째, 경매인의 의무와 책임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다. 경매인은 경매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문제가 있을 시,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여섯째, 미술품 진품보증 여부에 대한 규정은 영국, 홍콩, 미국은 구입자가 구입을 했을 경우, 작품의 진품보증을 해야 한다. 보증하지 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21].

4.2.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적 분석 결과

한국의 미술품 경매시장의 제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선스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사업자와 같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며 라이선스와 등록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라이선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라이선스 등록조건에 법규가 없다.

셋째, 경매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이 없으며, 경매회사에서 일하는 경매사조차 경매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넷째, 경매규정이 없으며 경매규정을 미 준수 시에 대한 처벌 여부 또한 없다.

다섯째, 국내의 민법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미술품에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

이 명확히 없다.

여섯째, 보증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경매규정에 대한 보증 법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4.3. 결론

해외와 국내의 미술품 경매법규를 비교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도 영국이나 미국, 홍콩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 수 있다. 해외의 성공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인 영국, 미국, 홍콩의 제도는 라이선스, 자격증과 경매인의 책임, 의무 등에 대해 법제화된 경매규정이 있는 반면, 국내에는 미술품 경매시장의 규정이 없다. 현재는 오로지 민법과 형법에 대조되어 안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장치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고, 미술품 경매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발생 시에는 미술 전문가들의 소견은 판결과 관련해 영향을 끼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에도 법제화를 필요로 인해 최근 미술품 유통법이 만들어졌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화랑의 반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로는 미술품시장의 법적인 부족한 부분이나 곧 국내에서 시행될 법안들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References

- [1] 2018 Art Guide to Distribution - Art Distribution and Management, Arts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8).
- [2] Article 4 (4) of the Copyright Act, Korea, 20 December (2016).
- [3] Myo Yeon Huh, Hyun Jung Choi, "The Effect of Integrated Humanities and Art Education up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ociability."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5.1 (2018):65-78.
- [4] <http://www.kookhak.co.kr>, Retrieved: July 29, (2018).
- [5] Ji-young Lee, "Art Market Bible", MiJinsa, (2013), pp.24-26.
- [6] Terry Smith (Translated by Kim Kyungwoon9, What Is Contemporary Art, (2013) : 369.
- [7] Yoon-a Jung, "Temptation of the Art Market: Contemporary Art as an Art Market." Art Books (2007):79-80, 234-236.
- [8] Jae-Joon Kim and Jae-Bum Kim, "Structure and Price of Korean Art Market.", Cultural Economy Research (1999).

- [9] Bong-su Kim, "Research on the status of domestic art market.",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stitute of Management, (2013).
- [10] Art Dictionary, Glossary, Korean Dictionary (1998).
- [11] Hyun-mi Yang, "A Study on Introduction of Korean Art Auction System." Korea Cultural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000).
- [12] Gyu-hyun Lee, "Art auction story." Salim Knowledge Series 314, Salim Publishing Co. (2008).
- [13] Gyu-seong Hwang, "collection and cheobu of museum collections.", Proceedings of the Samsung Museum of Art Studies. 3, Seoul: Samsung Group (2002).
- [14] Leonard D. Duboff, Christy O. King, "Art Law in a Nutshell", Source books Inc. (2000): 48.
- [15] Jae-hee Lee, "Economics of Modern Art." Top Books, (2016): 13-24.
- [16] <http://www.law.go.kr>, Retrieved September 2, (2018).
- [17] Ji-young Park, "Art Business, Art Books." (2014): 201.
- [18] NJ. Harper, "Auctioneers and Agents regulation." Department of justice Brisbane (1986).
- [19] www.nyc.go, Retrieved: August 12, (2018).
- [20] Mi-rim Baek, "art auction market legislation Study: Bas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Hong Kong."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2016).
- [21] Laws of Hong Kong, Mock Auctions Ordinance Chapter 255, Hong Kong (1975).